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1759

발의년월일 : 2018. 10. . 발 의 자 : 김낙주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우리시의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정의(안 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(안 제4조)
- 라.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(안 제5조)
- 마. 지원신청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조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3조

5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6. 입법예고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년 10월 22일 ~ 11월 1일(1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"의견없음"

7. 부서협의 결과 : 적합

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하남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화재안전취약가구"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- 다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 - 라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
 - 마. 「청소년 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
 - 바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
 - 사. 그 밖에 하남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 - 2. "주택용 소방시설"이란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)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제5조(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)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안 전취약가구로 한다.
 -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.
- 제6조(지원 신청)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

접수번호	는번호 접수일자 				처리일자	
지원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	세대원수	성별
	주소				전화번호(휴대폰)	
	□ 수 급 ㅈ		<u>.</u> -	□ 한부5	고가족	담당공무원
	대상자	□ 차상위계층		□ 청소년 가장		확 인 란
	구 분	□ 장애인		□ 65세이상 독거노인		
		□ 다문화기	· 수족	□기 타		
지원시설	지원시설					
「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
				ı	년 월	일
	신청인 (서명 또					
	(지원대상자와의 관계 :					
하남시장 귀하						
1.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 2.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: 장애인 복지카드,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한부모기족 증명서 등)		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관계법령 발췌서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- 제8조(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)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
 - 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)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(이하 "주택용 소방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3조(주택용 소방시설)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"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.